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108호
- 나.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 의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근래 도심 곳곳에 다수의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현수막, 텐트 등 집회용품이 곳곳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해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집회 신고만하면 24시간 내내 현수막이 게시되고 집회 이후에도 각종 집회 관련 용품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실제로 집회가 개최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고자 함
- 또한 현수막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 및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1호 신설)
- 다.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호 신설)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나. 관계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신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u><신설></u></p>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p> <p>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p>

나. 검토 내용

“현수막에 혐오·비방·모욕·인종차별·불법 조장 내용 금지(안 제11조제1항제7호)”

- 현행조례 제11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현수막의 표시방법, 표시내용, 바탕색, 크기, 신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은 광고물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생략)

-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고²⁾,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³⁾과 제311조(모욕)⁴⁾에 해당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7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집회현수막의 설치기간 및 내용(안 제11조의2)”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⁵⁾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⁶⁾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이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하여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7)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개수에 제한 없이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그러나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고 있으며, 최장 30일의 집회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곳곳에 방치된 집회 관련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관련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금지하고자 함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 나. 성명 / 다. 직업 / 라. 연락처 /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 201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⁸⁾(안전번호 13-0524, 붙임1 참조)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기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국회에서도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실제 집회가 열릴 때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⁹⁾ 발의하였으나 2년째 계류 중임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가 곧 집회 개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서 명시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집회 신고를 한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해당 집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8)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3-0524, 2023.12.11.)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등 관련)

답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9) (의안번호 210774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등12인) 등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7호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넣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 개정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실제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의 개정을 통해 현수막에 한하여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하 혐오 등의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 명시한 ‘허가·신고 또는 금지·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광고물’이 비단 현수막에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현수막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3조(붙임2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편의상 유동광고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에 ‘혐오 등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13-0524 , 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언상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광고물등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의 구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설치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레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문서번호

2023081400000052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제1항제7호와 제11조의2(집회현수막)를 신설하여 현수막의 표시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